

제172회 영등포구의회
2012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
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2. 12. 10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
專 門 委 員 朴 鍾 成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
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66호로 2012년 11월 14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에서 개정된
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도로점용 관련 업무의
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일부 점용물 도로점용료 적용요율 인하(안 제3조 별표 제7호)

-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

· 토지가격에 0.01을 곱한 금액 ⇒ 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

- 노점

· 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 ⇒ 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

4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
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에 적용요율 0.01을 곱한 금액에서 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
노점은 0.02를 곱한 금액에서 0.007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.
- 현행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서는 불법 노점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과태료보다 가로판매대 등에 대한 점용료가 더 과중하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,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에 따른 노점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됨.

5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도로법」, 「도로법 시행령」
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타구 조례 개정 현황 : 관악구, 서대문구

관 련 법 령

■ 도로법 시행령

제42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
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

제3조(점용료의 산정기준) 「도로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1조제2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.<개정 2005.09.30, 2008.05.29, 2008.09.30, 2011.7.28, 2012.7.30>

별표 1

점용료 산정기준(제3조 관련)

점용물의 종류		기준단위		점용료 (단위 : 원)
		점용단위	기간단위	
7.노점·자동판매기·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	가로판매대, 구두수선대	점용면적 1㎡	1년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
	노점			토지가격에 0.007을 곱한 금액
	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			토지가격에 0.02를 곱한 금액
	자동판매기·상품진열대			토지가격에 0.05를 곱한 금액

※ 비고

1.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의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. 이 경우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.

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

[별표 5] <개정 2011.5.30>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74조 관련)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 태 료 금 액		
		1회	2회	3회 이상
다.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	법 제101조제2항제2호	150		

나. 제2호다목의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

- 1) 초과 점용면적 1㎡ 이하인 경우: 10만원
- 2) 초과 점용면적이 1㎡를 넘는 경우: 1)의 금액에 1㎡를 넘는 1㎡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,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.